

# 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#### 건물인도청구의 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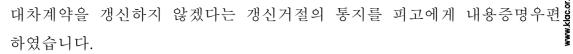
## 청 구 취 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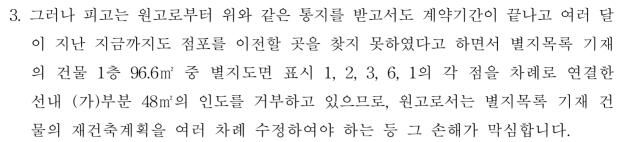
- 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96.6㎡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48㎡를 인도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20○○. ○. ○에.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1층 96.6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48㎡를 임대차보증금 5,000,000원, 월임차료 금 500,000원,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하여 피고에게 임대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이 낡았으므로 철거한 뒤 다시 건축하여야 할 형편이므로 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그러한 사유를 들어 위 임





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목록 기재의 건물 1층 96.6㎡ 중 별지도면 표시 1, 2, 3, 6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48㎡를 인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.

###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임대차계약서1. 갑 제2호증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1. 갑 제3호증건축물대장등본1. 갑 제4호증통고서1. 갑 제5호증설계도면(재건축예정인 건물)

#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각 1통1. 토지대장등본1통1. 소장부본1통1. 송달료납부서1통

 2000.
 0.
 0.

 위 원고
 000
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## 부동산의 표시

○○시 ○○구 ○○동 ○○의 ○
[도로명주소]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

1층 96.6m²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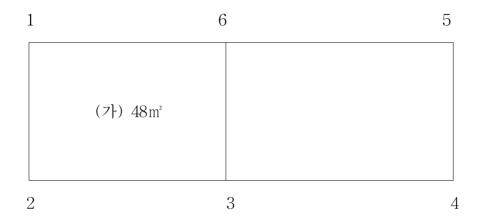
2층 96.6m²

3층 80m². 끝



# 도 면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의 ○ 3층 근린생활시설 중 1층 평면도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□☞소멸시효일람표 www.kkgc
제출부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	
비 용	・인지액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 ※ 아래(2)참조 ・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		
불복절차 및 기 간	· 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·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#### 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위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부동산이 있는 곳의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인 지

- 1.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당의 인지를 붙여야 함. 다만,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·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바, 현행 규정으로는 인지첩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또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음(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및 제28조의 2 제1항).
- 2.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: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산함(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).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에 동산인도청구의 소송목적의 값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인지를 붙여야 함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